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0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4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11601 집행판결청구의 소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피항소인 1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2. B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2020. 1. 17. 선고 2018가합1204 판결

변 론 종 결 2020. 6. 11.

판 결 선 고 2020. 7. 2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.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 사이의 소송총비용,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0

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1. 주위적 청구취지

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[redacted]등기소 등기관 등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[redacted]등기소 2015. 9. 4. 접수 제153332호로 마친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. 9. 4. 접수 제153333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,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. 6. 7. 접수 제67140호로 마친 각 가압류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예비적 청구취지

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[redacted]등기소 2007. 10. 10. 접수 제4352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,

나. 피고 [redacted]시는 주위적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0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6쪽 아래에서 7행의 "피고들을 상대로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[redacted]등기소 등기관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"를 "피고들을 상대로 '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[redacted]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'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"로 고친다.

○ 6쪽 맨 아랫줄 ~ 7쪽 8행 부분을 삭제한다.

○ 7~8쪽 '다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'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, 피고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을 아래의 판단과 같이 고친다.

『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자료를 보완하는 등으로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화해조서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재판상 화해 성립 후 등기가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함께 피고들의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(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73753 판결,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다1702 판결 등 참조).[1)]

1) 다만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다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이 각하되고 그로써 피고들 명의의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신청 역시 각하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0

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8-20

목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[redacted]시 I, J에 있는 K건물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, 주차장 및 기계실

1 내지 7층 각 761.43㎡

8층 618.76㎡

지하 1 내지 3층 각 778.95㎡

지하 4층 718.3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조 28.809㎡

2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[redacted]시 I, J에 있는 K건물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, 주차장 및 기계실

1 내지 7층 각 761.43㎡

8층 618.76㎡

지하 1 내지 3층 각 778.95㎡

지하 4층 718.3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조 28.809㎡. 끝.